

#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.

발 의 자 : 최민희 · 문대림 · 허성무  
노종면 · 박민규 · 윤건영  
이정헌 · 장종태 · 이재관  
조인철 · 김 현 · 황정아  
추미애 · 김남근 · 이원택  
권향엽 · 박지원 · 양부남  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은 공공보건의료기관, 공동주택,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(AED)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(E-Gen)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,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.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,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

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,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3 신설 등).

##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중 “개인위치정보”를 “위치정보”로 한다.

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3(응급장비의 위치정보 표시의무) ① 서비스의 유형,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“응급장비”라 한다)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위치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3항제3호 중 “그 밖의”를 “응급장비의 위치정보 등”으로 한

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<u>개인위치 정보 이용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<u>위치정보 이용</u>  <u>제30조의3(응급장비의 위치정보 표시의무)</u> ① 서비스의 유형,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“응급장비”라 한다)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</p>

<p>제34조(표준화의 추진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긴급구조와 <u>그 밖의</u>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</p> <p>4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③ <u>그 밖에 응급장비의 위치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34조(표준화의 추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응급장비의 위치정보 등</u>----- 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